

제147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5. 20.(수) 14:00 ~ 15:1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 해양경찰청 : 기획조정관, 담당 과장, 위원회담당관 등 5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1건(수정의결 1), 보고 1건

【심의·의결 1건】

연번	형식	안건명	주요내용	심의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정책·기술 자문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자문단의 자문단장·자문위원 조항 분리 및 구성 인력 확대** * 국정과제 56번(북극항로 상용화 추진) 및 119번(주변 4국 관계증진) ** 기존 6명 이상 15명 이하 → 변경 20명 내외 수정사항 위원회 설치 주체와 대상의 위계가 일치되도록 설치 주체를 수정 등 	수정의결	국제협력

【보고 1건】

연번	안건명	부서
1	중동 전쟁 관련 해양경찰청의 역할	수색구조

첨부1

수정의결 사항

□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p>제7조(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u>기획조정관</u>은 국제업무약정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업무 약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기획조정관</u>이 되고, -----</p>	<p>제7조(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p> <p>① <u>청장</u>은 ----- ----- -----</p> <p>② ----- ----- -----, <u>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u> -----</p>
<p>수정사유 설치 주체와 대상의 위계가 일치되도록 설치 주체를 수정하고, 제17조 기획조정관 인용을 위해 제7조에서 약칭을 수정</p>	

상 정 안	수 정 의 결
<p>제10조(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 제출)</p> <p>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u>결과보고서</u>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p>	<p>제10조(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 제출)</p> <p>① ----- ----- <u>결과 보고서</u> ----- ----- -----.</p>
<p>수정사유 띄어쓰기 수정</p>	

상 정 안	수 정 의 결
<p>제17조(자문단 설치 등) ① <u>기획조정관</u>은 국제협력업무의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추진자문 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p>	<p>제17조(자문단 설치 등) ① <u>청장</u>은 ----- ----- ----- -----.</p>
<p>수정사유 설치 주체와 대상의 위계가 일치되도록 설치 주체를 수정</p>	

□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내부 공무원(기획조정관)이 단장을 맡는 구조에서 ‘자문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이나 일반적인 어법상 외부 전문가 중심의 기구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실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능 중심의 위원회도 운영 중인 사례가 많이 있음.

- 모든 사례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하거나,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북극항로 관련 성과 도출을 위해 우선 의결을 하고 추후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명칭으로 인한 운영 상 어려움은 없으므로 전문가 신규 위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향후 소관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길 당부드림.

- 향후 타 기관의 운영 사례(자문단·위원회), 내부 공무원의 단장직 유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겠음.

□ 기타 논의사항

○ 사전질의 답변서에 위원이 제출한 질의서 또는 의견서의 취지가 지나치게 축약되어 질의 의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움. 전체 위원이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답변서 외 위원들의 사전질의 전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겠음.

○ 보고안건 작성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법령과 과거 선례 등을 기초 데이터로 함께 제시될 것을 당부드림.

- 위원회를 설치한 근본 취지는 내부의 집단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이나, 현재의 보고자료는 실무 중심의 축약형이 많아 전문 배경지식이 없는 외부 위원들이 내용을 깊이있게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음. 위원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처리 등을 통해 상세한 보완설명이 필요함.

- 아직은 해경청과 위원회 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해경청이 익숙한 지식도 외부위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음.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법적 근거와 각주 설명 등을 충실히 반영해주길 바람.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의문을 해결하고 지식을 확장하여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림.